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힘을내라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연장 알림

1. 대중교통과-1637(2020.3.20.)호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운영 알림" 문서 관련입니다.
2. '20.4.2.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에 대해 6개월(4.2~10.1)의 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3. 이에 따라 당초 시정기간은 10.1일로 종료되나,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고려하여 종료시점을 「'20.10.1.→'21.4.1.」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당초	변경
시정기간	'20.4.2. ~ '20.10.1.(6개월)	'20.4.2. ~ '21.4.1.(1년)

4. 지자체는 전세버스운송업 관리·감독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청,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서도 통근·통학 등 전세버스 수송계약 시 참고하는 등 시정기간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운영》

◇ (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정기간 운영
*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1항(설치) 및 같은 조 제7항(운영) 등 관련

◇ (대상) 「여객자동차법」 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기간) 2020.4.2. ~ 2021.4.1. (6 + 6개월 연장, 총 1년)

◇ (방법) 관할관청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 관련 범위반 적발 또는 신고 등 민원 접수 시, 운송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

- 10.1일 전 이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사업자도 연장된 시정기간 내에서 시정 가능
- 단, 시정 기회는 운영기간 내에서만 부여 가능('21.4.1일 이후 불가)

끝.



수신자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강원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 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타시과장), 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무관 최아진 행정사무관 양찬윤 버스정책과장 전결 2020.9.17. 나기호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95 (2020. 9. 1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82 / 1234nn@molit.go.kr / 대한민국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